

## 핵비확산 체제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함의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핵비확산 체제”란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일련의 국제적 합의와 제도 및 기구를 말하는데, 1968년에 체결된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이 핵비확산 체제의 꽃이자 토대이다. 관련 내용을 군축, 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세 분야로 구분해서 핵비확산 체제의 ‘3대 축’이라고 하며, 최근에는 핵테러를 네 번째 축으로 삼으려는 추세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서 실천되고 있거나 합의가 모아지고 있는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핵물질과 핵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원자력 선진국들이 핵연료를 독과점하고 비핵국들의 원자력 이용권한을 침해한다는 개발도상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한·미 동맹이 건실하게 지속되는 한 결코 핵무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우리사회 내에서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 국제적으로 그 저변을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사회의 핵주권 논란을 불식시키고 한·미 원자력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정립해야 하며, 1970년대의 핵정책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

목 차

- 1. 핵비확산 체제와 NPT
  - 가. “핵무기 확산금지조약”(NPT)
  - 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 2. 제8차 NPT 평가회의의 예상쟁점<sup>1)</sup>
- 3.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에의 합의
  - 가. 핵비확산 추세
  - 나. 정책적 고려사항
  - 다. 우리사회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

1. 핵비확산 체제와 NPT

가. “핵무기 확산금지조약”(NPT)

- “핵비확산 체제”란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일련의 국제적 합의와 제도 및 기구를 말하는 데, 남극에서 핵폭발이나 방사능 물질의 처리를 금지하기 위해서 1959년에 체결된 남극조약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많은 합의와 기구가 만들어짐.
  - 1968년에 체결된 “핵무기 확산금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은 핵비확산 체제의 꽃이자 토대임.
- NPT는 1970년에 발효된 이후 5년에 한 번씩 전체 회원국들이 모여서 조약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음.
  - 지금까지 일곱 차례의 평가회의가 개최되었고, 제8차 평가회의가 금년 5월 3~28일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임.
- NPT 평가회의는 핵국과 비핵국,<sup>2)</sup> 서방선진국과 비동맹국 등 각국의 실정과 정치적 색채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고 진솔하게 교환되는 대화의 장으로 자리잡아왔음.
  - NPT는 당초 유효기간을 25년으로 정하고 추후에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1995년 제5차 평가회의에서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확정하는 데 합의함.
- NPT는 12개항의 전문과 11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크게 여섯 가지 주제를 담고 있음.
- <①확산금지>: 전문 1~3항과 제I, II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국과 비핵국의 의무사항을 각각 구분해서 규정함.
  - 핵국은 핵무기와 핵무기의 통제권을 비핵국에게 “이전”(transfer)

- 하거나 비핵국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assist)하지 말아야 하고,
  - 비핵국은 핵국으로부터 핵무기나 핵무기의 통제권을 “접수”(receive)하거나 핵무기를 “제조”(manufacture), “획득”(acquire)해서는 안됨.
- <②안전조치>: 비핵국의 NPT 이행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며 전문의 4~5항과 제III조로 구성되어 있음.
  - 비핵국은 IAEA 사찰을 수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비핵국에 대해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련된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제III조는 개별국가 혹은 국제제도 차원에서 수출통제를 제도화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핵확산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③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비핵국들의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 6~7항과 제IV, V조로 구성됨.
  - “제I, II조에 따라서”(in conformity of articles I and II), 모든 국가들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할 “고유권한”(inalienable right)이 있음을 확인함.
  - 평화적인 목적의 핵실험 권한을 인정한 제V조는 핵실험의 평화적 용도와 군사적 용도를 구분하기 어렵고 평화적인 목적으로 위장한 핵개발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그동안 조항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사실상 사문화됨.
- <④군축>: 핵국들의 핵무기 감축을 규정한 전문 8~12항과 제VI조로 구성됨.
  - 군축 부문은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금지와 수직적 확산금지를 연계하려는 비핵국들의 요구로 NPT에 첨가된 조항임.
  - 핵국들은 핵군비경쟁을 종식시키고 핵군축을 실현하며 엄격한 국제 통제를 받는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general and complete

NPT는 모든 국가들에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할 권한있음을 확인

군축,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이 핵비확산의  
3대 축

disarmament)을 실현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약속했음.

- 제Ⅶ조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핵군축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합의된 조약은 미·러가 2010년 4월 8일 체코의 프라하에서 서명한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임.
- <⑤비핵국의 안전>: 비핵국들이 자국의 안전을 위해 자국영토를 비핵지대화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제Ⅶ조이며, 비핵지대 창설과 안전보장으로 세분됨.
  - 지금까지 중남미와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등 다섯 개 지역에 비핵지대가 창설되었음.
  -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5개 핵국들은 비핵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 안전보장과 조건을 첨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해 왔음.
- <⑥조약의 개정·이행·연장>: 조약의 이행절차와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약의 개정, 이행 및 연장 부문은 제Ⅷ, Ⅷ, X조로 구성됨.
  - 제X조는 회원국의 최고이익을 침해하는 특수한 사건이 있을 때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되 사전에 다른 회원국들과 유엔안보리에 통보하도록 규정함.
  - 발효 이후 조약의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는 개최된 적이 없으나 조약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회의는 1975년 이후 5년마다 개최되었음.
  - NPT 탈퇴 규정을 이용하여 조약탈퇴를 선언한 유일한 국가는 북한임.

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 일반적으로 NPT의 6개 부문을 군축, 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으로 정리해서 소위, ‘3대 축’(three pillar)이 핵비확산 체제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식됨.

- 9/11 테러 이후 핵무기와 핵물질을 사용한 테러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면서 핵테러를 네 번째 축으로 삼자는 의견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서 실천되고 있거나 합의가 모아지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본적인 방향은 핵물질과 핵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원자력 선진국들이 핵연료를 독과점하고 비핵국들의 원자력 이용권한을 침해한다는 개발도상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임.
- 첫째, 1997년 5월 IAEA 특별 이사회에서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체제를 확립할 목적으로 “추가 의정서”(Additional Protocol)가 채택되었음.
  - 추가 의정서는 기존의 전면 안전조치협정(INFCIRC/153)에 비해서 보고해야 할 내용과 범위가 훨씬 넓어서 핵무기 개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매우 효과적임.
  -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추가 의정서의 적용을 받는 나라에서는 사실상 비밀 핵무기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임.
- 둘째, 핵기술 선진국들이 비핵국과 체결하는 원자력협력협정도 핵무기 개발로의 전용을 차단하기 위한 까다로운 조항들을 담고 있음.
  - 한국의 경우 1974년 6월 16일 발효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유효기간이 2014년에 만료될 예정임.
  -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을 개발한 인도와 미국이 평화적 이용을 증진한다는 명분으로 2006년 3월에 체결한 미·인도 원자력협력협정이 핵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나쁜 사례로 기록되고 있음.<sup>2)</sup>
- 셋째, 개별 국가가 핵연료의 생산과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능력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 차원의 원자력 협력을 활성화한다는 명분하에, 핵연료주기시설을 국제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추가 의정서의 적용을 받는  
나라에서는 사실상 비밀  
핵무기 개발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임

핵연료주기를 국제화하는  
다양한 방안 중 지역핵연료  
주기센터가 논의됨

- 왔음.
- 대표적인 방안을 몇 가지 소개하면 아래와 같음.
  - <①지역핵연료주기센터: RFCC>: 1974년 말 IAEA 사무총장의 “과학고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Committee)의 제의에 따라 1975년에 시작된 “지역핵연료주기센터”(Regional Nuclear Fuel Cycle Center: RFCC) 창설 방안인데, 이 제안은 제1차 NPT 평가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수용되었음.
  - <②국제핵연료주기평가: INFCE>: 1978년 카터 행정부가 주도한 “국제핵연료주기평가”(International Nuclear Fuel Cycle Evaluation: INFCE) 회의에서도 지역차원의 원자력 협력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음.
  - 1980년 2월에 종료된 회의의 최종결과보고서는 플루토늄을 국제적으로 저장하는 계획이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면서 핵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이점을 가진다고 명시함.
  - <③제1차 NPT 평가회의 최종선언문>: 제1차 NPT 평가회의(1975.5.5~5.30)에서 채택된 최종선언문은 지역적 혹은 다자간 핵연료주기센터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개발 계획을 발전시키고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와 IAEA 안전조치의 적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함.
  - <④제4차 NPT 평가회의 최종선언문>: 제4차 NPT 평가회의(1990.8.20~9.14)에 참석한 한국의 이상옥 주제네바 대사는 기조연설에서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분량 이외의 잉여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의 국제적 관리를 위한 “지역핵연료주기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⑤아시아툼: Asiatom>: 유럽의 원자력공동체인 EURATOM을 본보기로 삼아 아시아에서 유사한 원자력공동체를 설립하자는 일본의 제안임.

- 일본이 1990년대 들어 민간차원에서 공개적으로 Asiatom 설립 구상을 밝혔고, 미국 일각에서도 지지한 바 있음.
- 아시아에서 원자력사용이 증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Asiatom의 창설로 귀결될 수 있는 원자력협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역내 국가들이 보유한 플루토늄에 대한 통합된 관리와 사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취지임.
- <⑥IAEA의 다국적 원자력 접근>: 핵기술과 핵물질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IAEA가 주관한 “다국적 원자력 접근”(Multilateral Nuclear Approach: MNA) 회의가 2004년 8월 이후 개최되었음.
- IAEA 전문가 그룹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함: ①상용 핵연료 은행의 운영을 통한 투명하고 장기적인 핵연료 공급 방안, ②IAEA가 핵연료의 안정된 공급을 보장하는 방안, ③관련국들이 자발적으로 기존의 핵연료주기 시설을 다국적으로 운용하거나 새로운 핵연료주기 시설을 건설해서 운용하는 방안 등.
- <⑦국제핵연료은행 설립>: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핵위협구상”(Nuclear Threat Initiative: NTI)이 비정치적이고 비차별적인 토대에 핵연료의 공급을 보장하는 체제가 필요하다면서 제안한 핵연료은행 설립안이 2009년 11월 IAEA 이사회에서 승인됨.
- 농축시설이 없는 나라가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수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자체적으로 농축시설을 건설하겠다는 동기를 없애는 것이 주요 목적임.
- IAEA, 미국, 노르웨이, UAE, EU 등이 총 1억 5천7백만 불의 기금을 조성하여 핵연료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⑧IAEA-러시아 농축우라늄 비축 협정>: 2010년 3월 29일 IAEA와 러시아가 시베리아의 Angarsk 농축공장에 농축원료인 육불화우라늄(UF6)을 비축했다가 핵연료가 필요한 국가에게 농축을 해서 제

농축시설이 없는 나라가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국제핵연료은행 설립 추진

3차 NPT 예비평가회의에서  
국제적 논의의 출발점을  
2000년 6차 평가회의  
시점으로 환원시킨다는  
합의에 도달

공하기로 합의함.

- 모두 1,000MWe 원자로 1기를 장전할 수 있는 양의 UF6를 비축하고, 수요국가의 원자로 특성에 따라서 2~4.95% 농축도의 핵연료를 공급하게 됨.

## 2. 제8차 NPT 평가회의의 예상쟁점<sup>3)</sup>

- 2009년 5월 4~15일 뉴욕에서 열린 제3차 NPT “예비평가회의”(Preparatory Committee: PrepCom)에서는 핵군축과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출발점을 부시 행정부 출범 이전인 2000년 제6차 NPT 평가회의의 시점으로 환원시킨다는 중요한 합의에 도달함.
  - 즉 제8차 NPT 평가회의에서 논의할 의제로 제6차 평가회의에서 다루었던 의제를 그대로 채택하기로 한 것임.
- 2009년 예비평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8차 NPT 평가회의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군축’, ‘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세 분야와 북한의 NPT 탈퇴로 그 중요성이 부각된 ‘조약 탈퇴’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①핵군축>: “핵무기 없는 세계”(nuclear-weapon-free-world)를 지향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비전과 미·러간의 추가 핵감축 약속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운데 미·러 양자 핵군축이 가장 긴요한 문제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됨.
  - 비핵국들은 핵국의 핵군축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을 표출하면서 미국과 중국 등이 “핵실험전면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을 신속하게 비준해서 지구상에서 핵실험을 완전히 금지할 것을 요구함.
  - 참가국들은 비핵지대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중동의 비핵지대화 노력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②비확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NPT 회원국이 되는, 소위 NPT의 “일반화”(universalization)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NPT 가입과 북한의 NPT 복귀를 촉구하는 의견이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음.

-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강행하고 있는 이란과 같이 NPT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됨.

- <③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기후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원자력이 다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원자력 기술의 확산이 핵비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이런 우려를 최소화하기위해서 NPT 제IV 조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각국의 원자력 발전을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개별국가의 재처리·농축시설 보유를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다국적 핵연료주기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됨.

- 예를 들어, IAEA가 주도하는 “핵연료은행”(Nuclear Fuel Bank), 러시아가 시베리아에 건설하자고 제안한 “국제우라늄농축센터”(International Uranium Enrichment Center: IUEC) 등이 논의되었음.

- 한편, 비핵국들은 이런 제안이 NPT 제IV 조에 보장된 회원국의 평화적 이용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다국적 핵연료주기 시설이 IAEA의 안전조치 하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평화적인 원자력 활동을 방해하거나 개별 국가의 핵연료주기 개발 노력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 미국의 부시행정부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을 개발한 인도의 평화적인 원자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범세계적인 원자력 수출 통제 지침을 무리하게 수정한 것이 핵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음.

비핵국들은 다국적  
핵연료주기 시설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적 원자력 활동을  
방해하거나 개별 국가의  
핵연료주기 개발 노력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조약탈퇴 선언시 유엔안보리가  
관여하여 탈퇴의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④조약 탈퇴>: 북한의 핵개발과 2003년 NPT 탈퇴 결정은 NPT에 대한 위반이며, 이런 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조약탈퇴에 관한 제X조를 개정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NPT 조약을 수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한편, 탈퇴조항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NPT에서 탈퇴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도 나왔는데, 예를 들어, 특정 국가가 조약탈퇴를 선언하는 경우 바로 유엔안보리가 이 문제에 관여해서 조약탈퇴의 원인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3.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의 함의

#### 가. 핵비확산 추세

- 오늘날 핵비확산 체제는 두 개의 상반된 움직임이 서로 맞물리며 전개되는 이율배반적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높은 유가와 기후온난화 문제 등으로 화석연료에 비해 전체적인 생산비용이 저렴하고 탄소배출 우려가 없는 원자력의 가치가 새롭게 각광받으면서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각국에서 원자력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원자력 산업의 발전과 저변확대가 필연적으로 핵기술과 핵물질의 확산과 핵테러 위협의 증대로 이어지게 될 상황을 우려하면서 핵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배가되고 있음.
- 원자력을 둘러싼 이율배반적 양상은 관련국들 사이에서도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원자력 선진국들은 재처리나 농축과 같은 민감한 기술과 능력이 다른 나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기술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제3세계를 중심으로 “원자력 르

- 네상스”라는 말이 회자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함.
- 또한 기술선진국들은 원자력 발전소 수출도 독점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에서 작년 말 타결된 한국의 UAE 상용원전 수주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음.
- 반면에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원자력을 선택하고, 자체 연구개발은 물론 해외 원전구매를 추진하면서 원전수주 시장이 경쟁적으로 가열되고 있는 추세임.
- 한편, 재처리·농축과 같은 민감기술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원자력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선행·후행 핵연료 주기를 완성해서 경제성을 높이고 사용후 핵연료의 장기적인 처분을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 되어 있음.

-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가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과 원자력 선진국들이 핵비확산 문제를 국가안보적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핵테러의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원자력 선진국으로서 갖춰야 할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결과적으로 한·미 원자력협력 협상이 진행될 향후 수년간은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협조를 얻어내야 하는 한국에게 결코 우호적인 시기라고 보기 어렵고,
- 당면 현안으로 되어 있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도 한·미 협상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할 것임.

#### 나. 정책적 고려사항

- 1) 핵주권 논란 불식
- 오래 전부터 국내 일각에서는 소위 ‘핵주권’을 옹호하는 논의가 있어 왔음.
- ‘핵주권’이란 소수의 핵무장 옹호론을 포함하지만 다수 의견은 적어

한·미 원자력 협력 협상이  
진행될 향후 수년간은  
미국으로부터 협조를  
얻어내야 하는 한국에게  
우호적 시기가 아님

핵주권 용어는 너무 자극적이어서 취지를 설득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비확산 체제의 현실임

도 일본 정도의 핵무장 잠재력을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함.

- 핵주권론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내에서 찬성과 반대가 공존함.
  - 한국이 불합리하게 재처리·농축시설 보유 권한을 탈취 당했다고 보는 측은 핵주권의 회복을 강력히 주장함.
  - 반면에 핵주권 논의에 반대하는 측은 우리도 재처리·농축시설을 가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북핵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주권을 언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의혹과 불신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말함.
  - 현 상태에서의 핵주권 논의가 너무 성급하고 감상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임.
- 핵주권론의 맹점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런 주장을 제기하는 방법에 더 큰 문제가 있음.
  - 우선 핵주권이란 용어자체가 너무 자극적이며 이런 용어로는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갖는다 하더라도 상대를 설득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 핵비확산 체제의 현실임.
  - 핵과 주권이란 강한 이미지의 두 단어를 배합함으로써 배타적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를 연상시킬 가능성이 큼.
  - 앞에 평화적이란 말을 넣어서 평화적 핵주권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핵주권이란 용어가 처음부터 강하게 인상지어둔 선정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기에는 역부족임.
- 따라서 사용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핵주권이란 용어를 쓰는 한 한국이 결국 핵무장을 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의혹을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것임.
  - 핵주권 문제는 여론이 잘못 모아지면 국익에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 하나'도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사려 깊게 써야 함.

2) 한·미 원자력협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

- 2009년부터 공론화되기 시작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문제는 북한이 두 차례의 핵실험을 했으므로 그동안 우리를 구속한 규제 장치를 풀자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임.
  - 원자력협정은 1973년에 체결되어 2012년에 효력이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 협상준비가 진행되면서 시기가 겹칠 뿐이지 북한 핵문제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인 것임.
- 한·미 원자력협력과 미·일 원자력협력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불평등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음.
  - 미국과 원자력 협상을 하던 당시 일본의 기술은 우리 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재처리시설도 보유하는 등 일본과 우리나라는 출발선이 달랐다는 점을 인정해야 함.
  - 일본이 기술개발을 한창 진행하던 1950~60년대에는 국제적으로 재처리시설 보유를 장려하던 시기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구상에 부응해서 원자력 협력이 활성화되었으며 원자력 기술 수출도 활발히 전개되었음.
-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과도한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님.
  - 일본은 재처리·농축시설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핵비확산법 등 핵비확산 체제의 보편적인 규범을 엄격하게 적용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엄청난 투명성 확보 노력을 기울였음.
-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원자력협정을 체결하던 시점을 전후해서 NPT 조약이 체결되었고 인도가 핵실험을 하는 등 세계적으로 핵비확산에 대한 경계심이 생기기 시작한 터라 국제정세도 우리에게 그만큼 불리했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앞으로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서는 미국에 대해 비판적이고 대결적

한·미 원자력협력과 미·일 원자력협력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불평등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음

지정학적 요인과 핵비확산  
정세를 고려할 때 원죄론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인식으로서 교정되어야 함

인 자세를 갖기 보다는 한·미 협력차원에서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방향이 될 것임.

**다. 우리사회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

- 민관을 막론하고 우리사회 일각에서 197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의 재처리시설 도입 시도가 잘못된 것이며 심지어는 原罪라는 인식이 존재하는데, 국가안보를 위해 대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적 맥락을 이해한다면 ‘원죄론’은 잘못된 평가라는 데 합의가 필요함.
- 다음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과 핵비확산 정세를 고려할 때 원죄론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인식으로서 교정되어야 함.
  - 당시는 NPT가 출범한 초기로서 핵비확산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기 이전이었고,<sup>4)</sup> 일본과 서독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재처리·농축을 추진하면서 NPT에 가입할 것인가의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던 시절이었음.<sup>5)</sup>
  - 월남이 공산화되고 닉슨 독트린으로 주한미군이 대거 빠져나가는 등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한국의 안보가 위협받던 상황이었음.
  - 닉슨의 방중으로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상대적으로 동북아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미국의 안보공약이 불신되던 상황이었음.
  - 남침용 땅굴 조성 등 북한의 대남 도발이 가중되었지만 우리의 전반적인 국력과 국방력은 북한에 비해 열세였음.
  -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박동진 외무장관 등 한국의 책임있는 고위 인 사들은 한국의 안보가 위협받으면 핵무장 할 수 있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막고 안보태세를 지탱하려고 고군분투했음.

한·미 동맹이 건실하게  
지속되는 한 한국은  
결코 핵무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우리사회  
내에서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 국제적  
으로 그 저변을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한·미 원자력협력 60년의 역사는 양측 모두에게 失보다는 得이 더 많았던 원자력 양자협력의 모범적인 선례라는 데 대해 양국이 인식을 같이 해야 함.
  - 물론 수십 년 간 협력을 진행해오면서 약간의 부정적인 사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건을 들춰내고 부각시키기 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개발하고 홍보해서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 역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은 이제 시대가 변화했고 세대가 바뀌었으며 국제 현실이 달라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특히 우리 과학자와 관료들이 각자의 가슴속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는 비관적이고 소극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말할 것은 말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함.
  - 한·미 원자력협력이야말로 두 나라가 상생할 수 있고 상생해야 하는 분야라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토대로 한·미간 유대를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함.
- 아울러 한·미 동맹이 건실하게 지속되는 한 한국은 결코 핵무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우리사회 내에서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 국제적으로 그 저변을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편집 고봉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미주

- 1) 편의상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핵국”(nuclear weapon state), 그렇지 않은 나라를 “비핵국”(non-nuclear weapon state)이라고 부름.
- 2)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제 원자력 시장의 문호를 인도에 개방하면서 NPT 회원국에게 부가된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했음.
- 3) 다음 논문의 관련 사항을 요약한 것임. 전성훈, “핵비확산 체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국제정치논총」, 제49집 4호, 2009, pp. 273~281.
- 4) NPT가 발효된 1970년 3월 5일 당시 회원국은 43개국에 불과했고 중국과 프랑스는 1992년에야 NPT에 가입했음. 또한 아랍의 모든 국가들이 가입을 완료한 시점은 1997년이고, 남아공도 1991년에 가입했음.
- 5) NPT 초기에는 원자력 기술 개발과 핵물질 교환 등의 국제협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찰을 실시하는 것이 IAEA의 기본방침이었음.